

서울특별시음반및비디오물판매·대여업자등록
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음반및비디오물판매·대여업자등록
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
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중 “공사의 자본금은 3조원”을 “공
사의 자본금은 4조원으로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, 제8조제1항, 제23조제1항 및 제24
조제1항중 “내무부장관”을 각각 “행정자치부
장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주택조례중개정조례안
심사보고서

1998. 9.
도시관리위원회

1. 경과

가. 제출자 및 제출일자

- 제 출 자: 서울특별시장
- 제출일자: 1998.8.27(의안번호 61)

나. 회부일자: 1998.8.28

다. 상정일자

- 제108회 임시회 제4차 도시관리위원회
(1998.9.18)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주택국장: 양 갑)

가. 제안이유

주택기금 조성 재원중 시민의 오해를 유
발할 수 있는 일부 조문을 정리하려는
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주택기금재원중 적립계정재원 일부 삭제
(주택조례 제10조제4항제4호)

○기타 출연금, 보조금

※시에서 기부금품 일반 모집근거 조항
으로 오해 우려

3. 관련법령

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1항

※제5조(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·접수제한)

-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
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
다.

4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양재대)

○본 개정조례안은 주택기금의 조성 재원중
시민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일부 조문
을 정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

○그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, 주택기금의 재
원으로

제1목, 정부 또는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
제2목,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의 매년도
결산결과 시에 대한 이익배당금

제3목,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제4목, 기타 출연금, 보조금, 차입금, 예탁

금 및 용자상환금 등으로 조성토록
규정하고 있는데

○제4목의 일부내용인 「기타 출연금 및 보조
금」이라는 규정에 대하여 기부금품모집규
제법령에 위반된다는 견해와 확대해석이라

는 견해가 양분되고 있는 상황이고, 또한
기부금품(성금) 모집근거 조항으로 오해하

는 사례가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
으로서, 이를 삭제하여도 제1목에 정부 또

는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을 재원으로 할
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으로

써 법조문의 명확화·투명화를 위해 바람
직하다고 사료됨.

5. 토론요지
○생략

6. 소위원회 심사내용
○소위원회 구성 없음.

7. 수정안의 요지
○수정안 없음

8. 심사결과
○원안가결

9. 기타 필요한 사항
○없음